

영국 사례

**문제의 주요 쟁점들을 잘 담고 있다면  
설령 완전히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사가 적절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 PCC는 Mr. John Forrester 가 「Sunday Mail」지 2007년 8월 12일자 『타락한 선생의 섹스 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신청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교사였던 시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약혼 중이고 슬하에 아이 하나를 두고 있으며 Aberdeen에 있는 'Sapphire Club'에서 매주 연극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부정확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PCC 윤리강령 1항(정확성)과 3항(프라이버시)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윤리강령 4항(괴롭힘)과 10항(은밀한 장치와 속임수)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불만신청인은 기사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극은 '섹스 쇼'가 아니라 다소 외설스런 코미디 공연에 가깝고, 자신이 사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와 사귀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졌으므로 제자와 연애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Kincorth academy'에서 해고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기사 내용 중 클럽 안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부분이 특히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만약 그 사진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았다면 사진 찍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게다가 기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클럽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신청인은 기자들이 2005년 이후 자신과 자신의 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unday Mail」지는 2005년 이후로 불만신청인과 그의 애인을 귀찮게 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불만신청인은 지난 2년 간 어떤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Sunday Mail」지는 클럽에서 찍은 사진이 불만신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불만신청인이 공중에게 오락 거리를 제공하는 쇼를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불만신청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Sunday Mail」지는 "그 기사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렇지만 불만신청인이 원한다면 의견을 편지 형식으로 신문에 실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불만신청인은 공개서한을 통해 자신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동의했고,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PCC를 통해 양 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가 된 상황에서 불만신청인은 태도를 바꿨다.

영국 PCC는 해당 기사의 주요

논점은 불만신청인이 Sapphire Club에서 공연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PCC는 연극을 '섹스 쇼'라고 묘사한 부분과 불만신청인이 'Kincorth Academy'를 떠나게 된 상황에 대해 불만신청인이 명백하게 설명할 기회를 줘야 했다고 판단했다. PCC는 이 두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서한의 제안과 「Sunday Mail」지가 마지막으로 교정한 내용은 균형 잡히고 적당한 반응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PCC는 「Sunday Mail」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방법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PCC는 「Sunday Mail」지가 불만신청인이 만족할만한 표현을 담은 공개서한을 신기로 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철회해 버린 점을 지적했다. PCC는 또 다른 소송을 불량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Sunday Mail」지를 비판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이었음에도 또 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C는 추후 수정된 공개서한 내용이 여전히 논쟁이 됐던 주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윤리강령 1항(정확성)에 관한 항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PCC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문제들은 경미한 수준이므로 어느 윤리강령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PCC는 윤리강령 3항(프라이버시)과 10항(은밀한 장치와 속임수)에 관련된 불만신청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불만신청인이 코미디언으로 있는 클럽에서 불만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고객이 공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어 PCC는 기사가 자신의 신원이나 직업을 감추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3항과 10항을 위반한 사실

이 없다고 판단했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Sunday Mail」지가 지난 2005년 이후 불만신청인과 그의 애인을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unday Mail」지가 혐의를 부정하며 불만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신문의 어떠한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Sunday Mail」지 측이 윤리강령 4항(괴롭힘)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관련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호주 사례 1

### 지나친 개인정보 보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지난 2007년 11월 8일과 9일 「The Daily Telegraph」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에 실린 기사에 대해 기사에 등장한 경찰관이 신청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기사는 당시 비번이었던 불만신청인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자신의 신원, 주소지, 자녀 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 등을 게재해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그로 인해 가족의 안전과 운택한 삶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he Daily Telegraph」지는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범죄와 공공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중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The Daily Telegraph」지는 경찰 내부의 매체도 피해자인 불만신청인에 관한 정보, 즉 자녀가 있는 비번 경찰관이라는 내용을 이미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보도 자료에서는 불만신청인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개인 정보 보도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였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개인의 세부 정보를 보도한 이번 기사는 불만신청인과 가족들의 프

라이버시와 안전을 침해했으며 신문이 지켜야 할 프라이버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 호주 사례 2

### 누구나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언론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호주귀금속 상인협회가 2007년 8월 27일자 「The Sydney Morning Herald」지의 온라인 판 기사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기사는 “70%의 소비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살 때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느끼며 귀금속 상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호주연합통신(AAP)의 설문조사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설문조사는 국제 공인 다이아몬드 평가 회사인 호주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DCLA)를 위해서 실시됐다. 이와 비슷한 기사가 news.com.au(the News Limited news website)에도 실렸다.

불만신청인 단체는 해당 설문조사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 단체는 “문제의 설문조사는 소비자들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기 전부터 다이아몬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끔 유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온라인 여론조사”라고 항의했다. 또한 불만신

청인 단체는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가 이번 여론 조사를 이용해 호주 귀금속 산업 전체를 헐뜯으려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호주연합통신 측은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가 다이아몬드 산업 전반에 관하여 유효하고 권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The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자신들은 “호주연합통신의 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The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자신에게 기사를 전송해주는 통신사들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믿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The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자신들은 “호주연합통신이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기사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주 언론평의회는 각

미디어와 그의 웹사이트는 기사의 출처와 상관없이 편집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가 다이아몬드에 관해 전문가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호주 언론평의회는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 측이 보도 자료에서 호주 귀금속 상인들의 정직성에 관한 다이아몬드 검증 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는 제시하지 않고 온라인 여론조사에 익명으로 참가한 불특정 다수의 견해만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했음을 지적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호주연합통신이나 「The Sydney Morning Herald」지의 웹사이트 smh.com.au는 그 설문조사의 방법론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Sydney Morning Herald」지가 설문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는 편집장들이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될 경우 설문조사의 진실성에 관해 독자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Sydney Morning Herald」지가 문제의 기사를 발행한 뒤, 설문조사가 온라인

여론 조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웹사이트(smh.com.au)를 통해 호주귀금속상인협회에 정정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호주귀금속상인협회는 온라인 여론 조사에 관하여 비슷한 기사를 실었던 news.com.au(the News Limited news의 웹사이트)가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소송을 철회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여론 조사 보도에 관한 분명한 지침을 밝혔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여론 조사 보도 관련 지침에 따르면 편집자들은 아무나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개 온라인 여론 조사는 설문 작성자 샘플 크기와 설문 문항들이 알려지지 않으며 조사 결과가 적절한 통계적인 샘플선정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가한 응답자들에 의해 생성된 것이므로 주의할 것 또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여론 조사와 기타 민감한 문제들에 관한 지침은 호주 언론평의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으며 모든 미디어 편집자들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했다.

『The Otago Daily Times』지의 편집장은 아이들의 이름을 기사에 포함한 것은 ‘의도치 않은 실수’였음을 시인했다. 편집장은 그 사건에 관한 후속 기사에서 아이들의 이름이 절대로 실리지 않도록 『The Otago Daily Times』지가 특별히 신경 썼음을 알려 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The Otago Daily Times』지가 아이들의 이름을 실수로 공개했다는 점은 불만신청인과 신문사 측 모두 동감한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 윤리강령 5조에 따르면 언론사의 편집장은 ‘아이들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보도할 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미 두 번에 걸쳐 사과 의사가 불만신청인에게 전달된 것을 알고 있으며 때로는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마무리되기도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번 『The Otago Daily Times』지의 실수는 간단히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The Otago Daily Times』지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만신청인이 신문사와 처음 연락해 항의를 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편집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했다. □

## 뉴질랜드 사례

### 제기된 타당한 불만에 대해 신속한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언론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사건의 피해자인 아이들의 이름을 공개한 『The Otago Daily Times』지를 상대로 아이들의 어머니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사 발행 직후, 『The Otago Daily Times』지에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불만신청인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만날 수 없었고 대신 다른 신문사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들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만신청인은 담당 책

임자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 불만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The Otago Daily Times』지의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이 보낸 최초의 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편집장은 “그 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고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를 통해 불만신청인의 항의 내용을 인지한 후, 공식적으로 사과를